서울특별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933

2023년 6월 28일
보건복지위원회

Ⅰ. 심사경과

1.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3년 6월 2일 유만희 의원 외 13명
2. 회부일자 : 2023년 6월 8일
3. 상정일자 : 제319회 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2023년 6월 19일 상정· 의결(원안가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유만희 의원)

1. 제안이유

○ 서울시 장애인에게 버스 이용요금을 지원하여 장애인 당사자의 교통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장애인 이동권 보장시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서울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사업 추진근거 신설(안 제4조)

나. 버스 이용요금을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근거 신설(안 제19조제1항 및 제2항)

다. 버스 이용요금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편성 근거 신설(안 제19조제3항)

라.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사업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근거 신설(안 제2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비대상 사유서 별첨)

다. 입법예고 : 2023. 6.13.~ 6.17.

Ⅲ. 검토보고의 요지(수석전문위원 박지향)

1 개정안의 취지

○ 개정안은 장애인의 교통비 부담 경감과 이동권 보장을 위한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을 위한 사업 근거 및 예산,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등에 관한 근거를 신설하고자 제안되었음.

○ 장애인의 이동권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 제 3조[1]에 명시되어 있음. 장애인에게 이동권의 확보는 신체적 불편을 일부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 및 환경과 상호작용하며 삶을 영위하는 사회적 일부로서의 삶을 가능하게 하는 기능적인 요소이며 나아가 이동권은 장애인의 생존과 직결되는 의미를 지니고 있음[2]

○ 장애인에 대한 버스요금 지원은 교통약자로서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에 관한 사항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임. 물론 이동권이라는 것이 장애인이 교통수단을 이용하면서 교통편의시설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지만, 이동권의 포괄적인 해석의 범위에서 교통비 지원을 통해 이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사회적 활동이 용이하도록 기여하는데 개정 취지를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정책 수단의 일환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보임

---

1)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제3조(이동권) 교통약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전문개정 2012. 6. 1.〕

2) 박창석 (2021). 기본권으로서의 장애인의 이동권. 법학논총, 38(4), 77-110.

2 주요사항 검토

가.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사업(안 제4조제5호 신설)

○ 개정안은 시장이 장애인 자립생활을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에 장애인버스요금 지원사업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임

- 서울시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사업은 만 6세 이상 서울시 거주 등록장애인에게 버스 이용요금을 지원하여 장애인 당사자의 교통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이동권 보장 수준을 제고하는 것으로 그 입법 취지는 타당하다고 사료됨

현 행	개 정 안
제4조(지원) 시장은 자립생활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한다. 1. ~ 4. (생 략) 〈신 설〉 5. (생 략)	제4조(지원) ----------. 1. ~ 4. (현행과 같음) 5.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사업 6. (현행 제5호와 같음)

나.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 (안 제19조 신설)

○ 신설되는 제8장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사업 제19조(버스요금 지원) 제1항은 '서울시 등록장애인과 동반 보호자 1인의 버스요금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 지원 대상, 지원 한도, 지원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하며 제3항은 버스요금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8장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사업
〈신 설〉	제19조(버스요금 지원) ① 시장은 장애인과 장애인을 부양하는 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의 자립을 돕기 위하여 서울시 등록 장애인과 동반 보호자 1인의 버스요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 대상, 지원 한도, 지원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③ 시장은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2021년 교통약자 이동 편의 실태조사 연구’(이하, 이동 편의 실태조사)(국토교통부, 2022)에 의하면, 2021년 기준으로 전국의 교통약자 인구는 15,509 천 명으로 총인구 대비 약 30.0%의 비율로 교통약자의 유형별로 살펴보면, 총인구에 대비하여 고령자 17.1%, 어린이 6.2%, 장애인 5.1%, 영유아 동반자 3.8%, 임산부 0.5% 순으로, 교통약자 중 장애인이 17.1%를 차지함.

○ 한국장애인개발원의 「2022년 장애통계연보」에 의하면 2020년 장애인 가구의 월평균 총 가구소득은 전국 월평균 가구소득의 51.6% 수준으로 낮으나, 장애로 인한 의료비, 교통비 등의 각종 비용이 추가로 지출되어 장애인 가구의 추가 비용에 대한 보장책이 필요한 실정임.

- 또한 지역 내 교통약자가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으로는 버스가 40.4%로 가장 높았으며, 전반적인 승용차의 보유 증가에 따라 승용차를 이용하는 경우가 다음으로 많았음을 알 수 있음

〈표1〉 장애로 인한 월평균 추가 소요 비용

(단위: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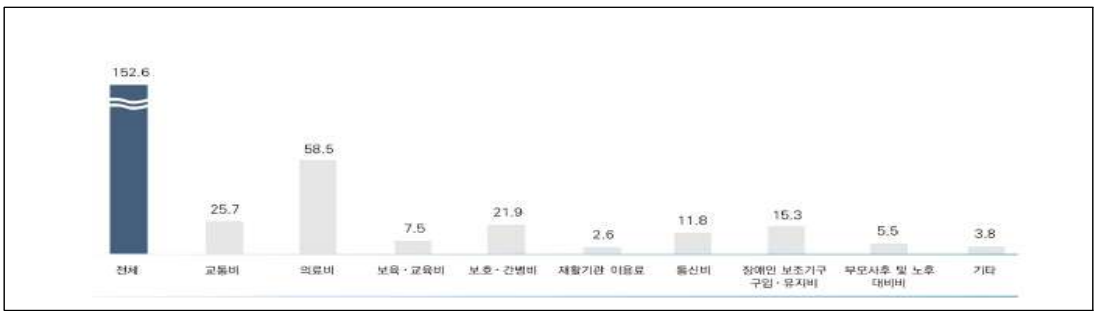

*출처 : 한국장애인개발원 「2020년 장애통계연도」

○ 따라서, 장애인의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교통수단 이용 시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이동권 보장을 위한 버스요금 지원사업은 필요하다 하겠음.

- 서울시에서 25개구 총 9,104명(장애인 5,625명, 보호자 3,422명, 기타 5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사업 의견수렴 설문조사('22.12.~'23.2.)에서도 중증·경증 장애인 모두 버스 이용 시 개선사항으로 경제적 부담 해소를 가장 많이 원

하는 것으로 나타남.

○ 안 제19조의제2항은 버스요금의 지원 대상, 지원 한도, 지원 방법 등에 대해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서울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사업은 아래와 같음.

□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사업 개요
○ 지원대상 : 서울시 거주 만6세 이상 장애인('23.5월 현재 390천명)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동행하는 사람 1명 무료 승차 지원
○ 지원기준 : 월 최대 5만원 (1,250원×2회×20일)
- 심한 장애인은 동승자 1인 포함 최대 10만원(장애인본인·동승자 1인 각 5만원 限)
○ 지원범위 : 서울버스 이용요금 및 경기 · 인천 버스 환승요금
○ 지원방법 : 장애인이 선결제 이용 후 월 단위 정산하여 계좌환급
○ '23년 예산 : 4,171백만원

○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 대상은 서울시 거주 만 6세 이상 장애인으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3]의 경우, 동행하는 사람 1명까지 무료로 지원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임.

○ 지원기준으로는 1인당 월 최대 5만원 이내의 교통비를 지원하며 심한 장애인인 경우에는 동승자 1명 포함 최대 10만원까지 지원하도록 규정함. 실제 장애인들의 한 달 교통비가 얼마나 소요되는지에 따라 지원 금액의 적정 여부가 결정되어야 할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2020년 장애실태조사' 통계에 따르면 중증 장애로

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정도 (종전 1~3급)

인한 월평균 추가지출 교통비용이 25,700원으로 조사된바, 추후 지원금액에 대한 검토 여부는 필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지원범위로는 서울버스 이용요금 및 경기 · 인천버스 환승요금으로 장애인이 선 결재 이용 후 월 단위 정산하여 환급하는 것이며 사업 추진에 따른 예산편성 및 지원 등에 관해서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표2〉 버스요금 지원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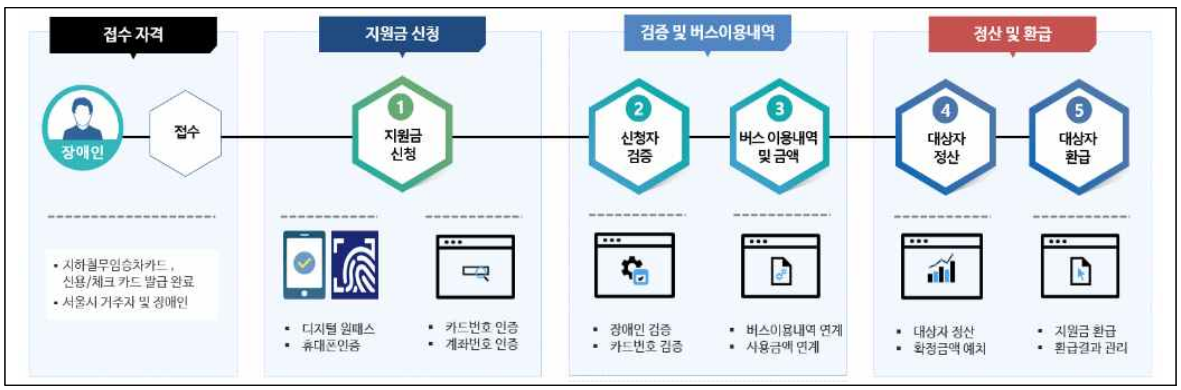

다. 정보의 수집 및 이용 (안 제20조 신설)

○ 시장은 장애인 버스요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과 보호자에 관한 개인정보 수집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음.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0조(정보의 수집 및 이용) ① 시장은 장애인 버스요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과 보호자에 관한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해당 정보를 그 수집 목적의 범위 내에서 이용

	할 수 있다. ② 개인정보의 수집, 관리 및 개인정보의 보호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신청 접수 및 지원금 지급 등의 사업 운영을 위하여 장애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 등에 대한 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정보수집 등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집행 부서는 본 개정 조례(안)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의 종류에 ‘ 장애인버스요금 지원사업’을 추가하고,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사업의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원인가결 의견 제출함.

3 종합 검토 의견

○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은 장애인의 건강증진과 사회참여 확대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어 이동권 보장논의가 확대되는 추세를 반영하여 본 개정안의 필요성 및 입법 취지는 적절한 것으로 사료되며 장애로 인해 사회활동 참여에 제약이 있는 장애인에 대한 지원은 합리적으로 인정된다고 볼 수 있을 것임.

○ 「장애인복지법」 제30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과 장애

인을 부양하는 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의 자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세제상의 조치,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그 밖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하는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조례 개정을 통해 지원사업의 내용을 구체화하여 명시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사료됨.

○ 단, 장애인에 대한 교통비 지원이 경증 장애인들에게만 혜택이 주어진다는 일부 의견이 있는바, 현금 급부적 성격의 복지서비스도 필요하지만, 장애인들의 교통편의시설 확충 등을 위한 정책도 같이 병행 추진되도록 하여야 할 것임.

붙임1

장애인 이동편의 관련 市 지원수단 현황

구 분	특별교통수단	대체교통수단		
	장애인콜택시	개인 임차택시	장애인 복지콜	장애인 바우처택시
근거법령	교통약자법		장애인복지법, 교통약자법	교통약자법
운영기관	**택시정책과** (서울시설공단)		**장애인자립지원과** (서울시각장애인연합회)	**택시정책과** (서울시각장애인연합회)
이용대상	장애정도가 심한 보행상 장애인 **<휠/비휠 장애인>**	장콜 이용대상 중 **<비휠체어 장애인>**	장애정도가 심한 시각 또는 신장 장애인 **<비휠체어 장애인>**	장콜, 복지콜 이용자 중 만14세 이상 서울시민 **<비휠체어 장애인>**
운영규모	**특장차량 662대**	**임차택시 57대**	승합차량 158대 (비특장차)	**콜택시 5,420대** (나비콜, 국민캡) ※마카롱은 8월9일 계약해지
운영인력	**총 850명** (운전원 780, 상담원 37, 관리직 33) ※ 임차택시 57명 별도		총 220명 (운전원 185 상담원 15, 관리직 20) ※ 바우처콜기사 별도	
이용방법	이동지원센터(1개소) 접수·처리		서울시각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접수•처리	나비콜, 국민캡 콜센터 접수·처리
등록인원	**38,857명** (서울시 26,031, 비서울 12,826)		24,787명 (시각 14,650, 신장 10,137)	12,056명 **※ 장콜등록자 4,576명**
탑승건수	209,516건	22,002건	54,961건	77,833건
(연)※'23년 2월 기준	'22년 1,348천건, '21년 1,220천건, '20년 972천건, '19년 1,179천건		'22년 374천건, '21년 368천건, '20년 354천건, '19년 371천건,	'22년 481천건, '21년 496천건, '20년 373천건, '19년 291천건,
이용요금	도시철도요금 3배이내(요금은 이용자 전액 부담)			택시요금의 25% 본인부담 (요금지원 75%, 3만원한도)
이용횟수	제한 없음		시각 : 제한 없음 신장 : 1일 2회 (병원)	1일 최대 4회, 월 40회 가능
운행시간	24시간 연중무휴			
운행지역	서울시계 및 인접한 12개시, 인천국제공항 ※ 부천, 김포, 고양, 양주, 의정부, 남양주, 구리, 하남, 성남, 과천, 안양, 광명			
대기시간	**일평균 35분**		일평균 43분	바우처택시 확인불가
요금비교 0~5㎞	1,500원	1,500원	1,500원	2,000원
요금비교 **9~10㎞**	**2,900원**	**2,900원**	**2,900원**	**3,000원**
요금비교 19~20㎞	3,600원	3,600원	3,600원	5,000원
'23년 사업비	75,940백만원	4,000백만원	14,900백만원	7,728백만원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토론요지 : 「없음」

Ⅵ. 심사결과 : 원안가결

Ⅶ. 소수의견 요지 : 「없음」

Ⅷ.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만희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933

발 의 년 월 일 : 2023년 06월 02일
발 의 자 : 유만희, 강석주, 김영옥, 김영철, 김종길, 김혜영, 민병주, 서상열, 송경택, 이상욱, 이효원, 최민규, 최유희, 홍국표 의원(14명)

1. 제안이유

○ 서울시 장애인에게 버스 이용요금을 지원하여 장애인 당사자의 교통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장애인 이동권 보장시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서울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사업 추진근거 신설(안 제4조)

나. 버스 이용요금을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근거 신설(안 제19조제1항 및 제2항)

다. 버스 이용요금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편성 근거 신설(안 제19조제3항)

라.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사업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근거 신설(안 제2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

다. 기타 : 신·구조문 대비표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사업

제8장(제19조 및 제20조)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장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사업

제19조(버스요금 지원) ① 시장은 장애인과 장애인을 부양하는 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의 자립을 돕기 위하여 서울시 등록 장애인과 동반 보호자 1인의 버스요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 대상, 지원 한도, 지원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③ 시장은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정보의 수집 및 이용) ① 시장은 장애인 버스요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과 보호자에 관한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해당 정보를 그 수집 목적의 범위 내에서 이용할 수 있다.

② 개인정보의 수집, 관리 및 개인정보의 보호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9조를 제21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지원) 시장은 자립생활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한다.	제4조(지원) ----------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사업
5. (생 략)	6. (현행 제5호와 같음)
<신 설>	제8장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사업
<신 설>	제19조(버스요금 지원) ① 시장은 장애인과 장애인을 부양하는 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의 자립을 돕기 위하여 서울시 등록 장애인과 동반 보호자 1인의 버스요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 대상, 지원 한도, 지원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③ 시장은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제20조(정보의 수집 및 이용) ① 시장은 장애인 버스요금을 지원

	하기 위하여 장애인과 보호자에 관한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해당 정보를 그 수집 목적의 범위 내에서 이용할 수 있다. ② 개인정보의 수집, 관리 및 개인정보의 보호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9조 (생 략)	제21조 (현행 제19조와 같음)